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의 2017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3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29면)



본소에서는 지난 3월 16일 '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2017년 첫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관련기사 29면)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 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심포지엄 ❶

22 • 가정폭력상담실

25 • 인터넷 상담

26 • 결혼과 인생(170) 영화이야기
나, 다니엘 블레이크 _ 김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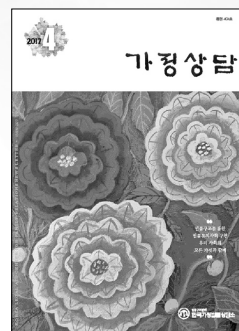
28 • 좋은 책
빈 배처럼 텅 비어

29 • 상담소 소식

31 • 지부 소식

32 • 상담통계

33 • 백인번호사단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이 달의 메시지

절망과 위기를 넘어 법과 원칙에 근거한 상식의 시대로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지난해 가을부터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5개월여 동안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그 결과 전직 대통령이 된 이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속결정이 그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현실의 원인이 된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상황을 가져왔고 이 일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전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큰 산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개개인의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그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는 것은 민주사회로서는 당연하며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 대통령을 두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미혼으로 살아온 평생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연민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앞으로 대통령은 여성이거나 가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 없는 편향을 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현실을 두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체적이지만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처우함으로써 국격이 떨어진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폭넓은 의견들이 자유롭게 평화적으로 표출되고 무엇보다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성숙하게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민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전제군주가 아니고 그 자리는 위임된 권력이라는 것, 대통령에 반대한다고 해서 중북이나 좌파가 아니라는 것, 함부로 군대를 불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성 대통령에 대한 논란 속에서 저는 우리나라 첫 여성 변호사, 법학박사였던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내, 딸, 어머니로서 우리 사회에서 선구자적 길을 열어온 선생님의 길과 가르침, 무엇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그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상담소를 열었던 선생님이셨기에 아마도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인간적인 연민과 법과 원칙의 경계를 분명히 하셨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큰 고비를 넘어온 이 시점에 지난했던 지난 5개 월 여를 돌아봅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이었지만 진정 위대한 시민, 깨어있는 국민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다고 봅니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없으며 법치주의가 지켜질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국가를 위기상황에서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국민 모두는 지금 동트기 직전의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을 지나온 느낌입니다. 이제 여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도 벚꽃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운 시민임을 잊지 말고 법과 원칙,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일임을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히 깨닫고 기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년후견 상담 통계 분석(2013.7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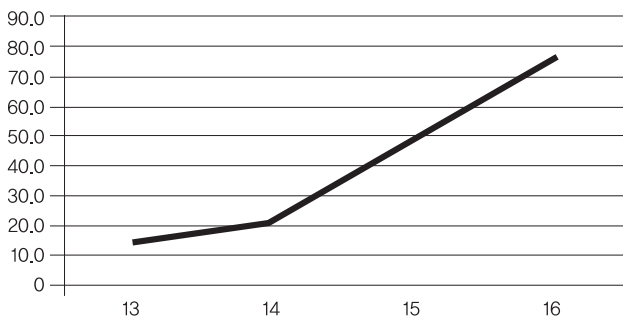
성년후견관련 상담 2013년(시행 첫해)에 비해 5.3배 증가

성년후견제이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에서는 총 1,586건의 성년후견 상담을 진행하였다.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상담 건수가 143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211건, 2015년에는 469건, 2016년에는 76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이를 볼 때 고령화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 성년후견제도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상담소 통계가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연도별 성년후견 상담건수



성년후견 상담 내담자 및 상대자에 대한 분석

본 상담소에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진행된 총 1,586건의 성년후견 상담을 내담자 및 상대자의 성별과 연령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미상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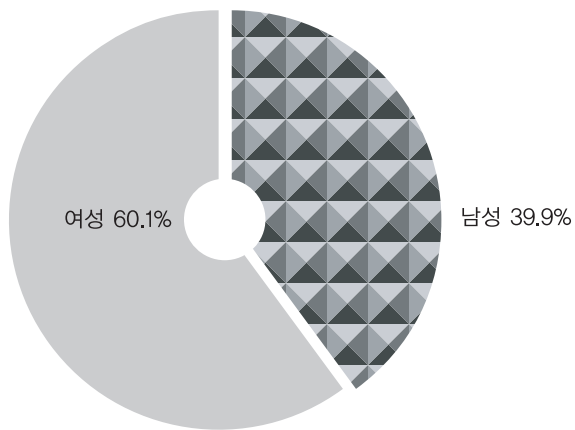
* 3월 16일 본소에서 열린 ‘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심포지엄의 내용으로 이번 호에는 본소의 상담통계 분석과 주제발표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게재한다. 내용 전체는 자료집으로 발간되었으며 본소 홈페이지에서 그 전문을 볼 수 있다.

1. 내담자

1) 남녀별

성년후견에 대해 문의하러 온 내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은 953명(60.1%), 남성은 633명(39.9%)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가량 많았다.

성 별	수(명)	백분율(%)
여 성	953	60.1
남 성	633	39.9
합 계	1,586	100.0



2) 연령별

내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여성은 50대(259명, 27.2%)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대(231명, 24.3%), 40대(186명, 19.6%), 70대(141명, 14.8%), 30대(67명, 7.0%), 80대 이상

(33명, 3.5%), 20대(32명, 3.4%), 10대(2명, 0.2%)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40대와 50대가 각 151명(각 23.9%)으로 동일하게 많았고, 다음은 60대(148명, 23.4%), 70대(84명, 13.3%), 30대(43명, 6.8%), 80대 이상(30명, 4.7%), 20대(24명, 3.8%), 10대(1명, 0.2%)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합하여 살펴보면, 50대가 410명(2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대(379명, 23.9%), 40대(337명, 21.3%), 70대(225명, 14.2%) 순으로 나타났다.

본 상담소에서 2016년도에 진행된 전체 면접상담(총 22,067건)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이 29.7%였으나 성년후견 상담에서는 60대 이상이 42.1%로 나타나 요보호자인 상대방의 성년후견을 문의하러 오는 내담자도 일반 상담의 내담자보다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상대자

1) 남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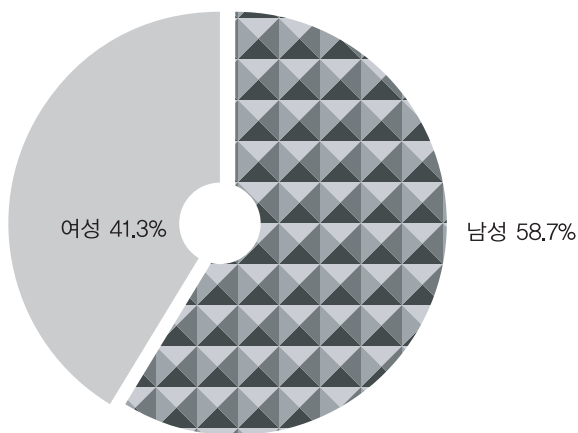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자인 상대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655명(41.3%), 남성은 931명(58.7%)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4배가량 많았다.

성년후견을 문의하러 온 내담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던 반면(여성 60.1%, 남성 39.9%)에 요보호자인 상대

연 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여 성	수(명)	2	32	67	186	259	231	141	33	951
	백분율(%)	0.2	3.4	7.0	19.6	27.2	24.3	14.8	3.5	100.0
남 성	수(명)	1	24	43	151	151	148	84	30	632
	백분율(%)	0.2	3.8	6.8	23.9	23.9	23.4	13.3	4.7	100.0
합 계	수(명)	3	56	110	337	410	379	225	63	1,583
	백분율(%)	0.2	3.5	6.9	21.3	25.9	23.9	14.2	4.0	100.0

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여성 41.3%, 남성 58.7%). 성년후견 상담에서는 요보호자인 상대방의 재산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는데 상대자 중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특히 고령자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현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 별	수(명)	백분율(%)
여 성	655	41.3
남 성	931	58.7
합 계	1,586	100.0



2) 연령별

상대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여성은 70대(111명, 25.6%)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80대 이상(108명, 24.9%), 60대(55명, 12.7%), 50대(53명, 12.2%), 40대(50명, 11.5%), 30대(26명, 6.0%), 20대(23명, 5.3%), 10대(8명, 1.8%)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0대(112명, 18.7%)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대(104명, 17.3%), 80대 이상(96명, 16.0%), 40대(92명, 15.3%), 70대(80명, 13.3%), 30대(65명, 10.8%), 20대(49명, 8.2%), 10대(2명, 0.3%)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합하여 살펴보면, 80대 이상(204명, 19.7%)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70대(191명, 18.5%), 60대(167명, 16.2%), 50대(157명, 15.2%) 순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비율이 높았고, 60대 이상이 54.4%로 절반을 넘었다.

상담사례 분석

본 상담소에서 진행된 성년후견 상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치매나 질병 등으로 인해 법률행위가 어려운 고령의 부모나 배우자를 위해 성년후견을 문의해왔고, 일부 내담자들은 선천적 장애나 사고로 인해 법률행위 능력이 부족한 성인자녀나 형제들을 위해 성년후견을 문의해왔다. 이 때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후견인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 등을 통해 장래에 재산을 받을 예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이가 피후견인의 부모나 배우자일 때에는 가족 간에 특별한 갈등이 없으나 형제나 자녀인 경우에는 다른 형제 및 자녀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심각한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본 상담소의 상담 건 중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례만 별도로 추출해 후견인 후보자, 다툼의 주제, 정신적 제약의 원인, 청구의 목적 등을 분석해 보았다.

성 별 \ 연 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여 성	수(명)	8	23	26	50	53	55	111	108	434
	백분율(%)	1.8	5.3	6.0	11.5	12.2	12.7	25.6	24.9	100.0
남 성	수(명)	2	49	65	92	104	112	80	96	600
	백분율(%)	0.3	8.2	10.8	15.3	17.3	18.7	13.3	16.0	100.0
합 계	수(명)	10	72	91	142	157	167	191	204	1,034
	백분율(%)	1.0	7.0	8.8	13.7	15.2	16.2	18.5	19.7	100.0

1. 후견인 후보자에 따른 구분

1) 부 또는 모

(내담자 60대 남성)

아들이 10여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되었다. 아들 혼자서는 전혀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다. 아들 앞으로 나온 보상금이 있는데 병원비 등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다. 내가 아들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방법은?

(내담자 60대 여성)

딸이 40대인데 5년 전 파킨슨병에 걸려 현재는 거동도 힘든 상황이다. 사위는 2년 전 가출했다. 그 때부터 내가 딸과 손자를 데려와 현재까지 돌보고 있다. 딸 앞으로 내가 장만해준 집이 한 채 있는데 사위가 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것이라고 한다. 내가 딸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2) 배우자

(내담자 60대 남성)

아내가 4년 전 쓰러졌다. 아이들은 결혼해 모두 분가하였고, 내가 아내의 병간호를 하고 있다. 그동안 아내 명의 통장에서 병원비를 지급해 왔는데 어느 날 비밀번호를 3회 이상 틀려서 더 이상 인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불편한 점이 많아 내가 아내의 후견인이 되고자 한다.

3) 형제자매

(내담자 60대 여성)

동생이 젊어서 자영업을 했고,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그런데 갑자기 루게릭에 걸려 전혀 활동을 못하고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조카들과 올케가 병간호는커녕 동생을 제대로 부양조차 하지 않는다. 방법이 없는가?

(내담자 60대 여성)

동생이 정신지체3급이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물려준 재산이 상당한데 어떤 남자가 동생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 동생과 혼인신고도 일방적으로 해놓아서 혼인무효도 진행하였다. 동생의 재산을 지켜주고 싶은데 내가 동생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4) 자녀

(내담자 20대 여성)

아버지가 3년 전 갑자기 쓰러졌고, 현재는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일 수 있다. 아버지는 현재 매월 200만 원 가량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복 오빠가 아버지의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아버지 병원비를 내지 않아 계속 밀리고 있다. 내가 독축을 하면 그 때어야 마지못해 내곤 한다. 내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5) 기타

(1) 기타 친족

(형수)

(내담자 50대 여성)

시동생이 1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까지 입원 중이다. 동서와 조카들은 15년 전 외국으로 갔는데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긴 상태이다. 시동생은 사업관계로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동서와 연락이 안 닿으니 답답할 뿐이다. 내 남편도 사업을 해서 바쁜데 형수인 내가 시동생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올케)

(내담자 60대 여성)

시누이가 파킨슨병이다. 시누이의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고 형제자매는 모두 80이 넘는 고령이다. 내가 가깝게 살고 있어서 병원예약이나 은행 업무 등을 도맡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누이의 부탁으로 내가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2) 사실혼 배우자

(내담자 70대 여성)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어 아예 문 밖 출입을 못하는 상황이다. 남편은 이혼한 전배우자 및 자녀들과 수십 년간 연락 없이 지냈고, 유일하게 여동생과만 연락하고 지낸다. 사실혼 배우자인 나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가?

(3) 타인

(요양보호사)

(내담자 40대 남성)

나는 요양보호사이다. 같이 방문한 분은 시각과 청각에 장애가 있고, 이 분의 아들 역시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다. 남편은 사망하였고, 일가 친척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나는 현재 10년째 이 분들의 요양을 맡고 있다. 내가 이 분과 이 분 아들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4) 미정

(내담자 전국택시공제조합 직원)

20대인 최OO씨가 택시를 돌리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최씨가 가해자(80% 정도의 책임)인데 사고 후 7, 8세 정도의 지능을 갖게 되었다. 가해자에게 유일한 친척인 고모 한 분이 있는데 연락하면 인연 끊고 산 지 오래 되었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한다. 벌써 최씨의 치료비로 1억원이 들었다. 최씨에게 차도도 없고, 우리쪽 과실이 더 적은데 언제까지 가해자인 최씨를 이렇게 병원에 두고 지켜만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최씨의 성년후견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6) 2인 이상인 경우

(모와 자)

(내담자 70대 여성, 40대 남성)

남편이 오랜 기간 치매를 앓다가 얼마 전 뇌진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다. 현재 재산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작은 주택이 전부이다. 병원비와 생활비 문제로 주택연금 신청하고 싶은데 은행에서는 주택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당장 돈이 급한데 나와 아들이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절차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가?

(형제와 자)

(내담자 60대 여성)

오빠가 식물인간상태인데 새언니와 오래 전 이혼했고 조카도 새언니가 데리고 가 거의 왕래 없이 지냈다. 오빠에게 적지만 재산이 있는데 조카가 갑자기 나타나 임의대로 당진할까 걱정이 된다. 가능하다면 나와 조카가 같이 공동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2. 다툼의 주체에 따른 구분

1) 모와 부

(내담자 50대 여성)

자녀가 한 명 있고 25세인데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 원활한 사회생활이 어렵다. 전 남편과는 오래 전 이혼했고 그동안 연락조차 없이 지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혼한 전 남편이 그 아이의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해왔다. 전 남편의 청구를 막고 내가 후견인이 되는 방법은?

2) 자녀와 자녀

(내담자 40대 여성)

어머니가 90세가 넘어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동안 주로 어머니를 돌봐온 사람은 나다. 그런데 갑자기 큰언니가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했음을 알게 되었다. 언니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어머니의 후견인이 되는 방법은?

3) 자녀와 형제

(내담자 30대 여성)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있다. 삼촌은 사기꾼 기질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요양원에서 나오게 해 주고 젊은 여자가 돌보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려고 한다. 자식들은 너무 걱정스럽다. 삼촌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4) 형제와 형제

(내담자 60대 남성)

결혼하지 않은 누나가 얼마 전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다. 형도 있는데 그 형은 도박에 빠져 많은 재산을 탕진했다. 그런데 그 형이 근래 들어 누나를 자주 찾아와 돈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누나의 성년후견인이 되겠다고 한다. 누나에게 약 5억원 상

당의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누나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방법은?

5) 배우자와 자녀

(내담자 70대 남성)

아내가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다. 이에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하여 내가 후견인이 되었다. 이후 처남이 누나도 불쌍하고 또 돌보는 나도 고생한다며 아내 명의로 재산을 조금 주어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재산 증여를 알게 된 아들이 자신이 성년후견인이 되겠다고 하여 갈등 중이다.

6) 혼외자녀와 배우자

(내담자 30대 남성)

아버지가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계속 누워 있다. 아버지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나 30년 전 나의 생모를 만나 나를 낳았고, 10년 전부터는 내 생모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법률상 배우자 및 그 자녀들과 거의 연락 없이 지냈는데 얼마 전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알게 된 법률상 배우자가 나를 찾아와 성년후견 동의를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나는 내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으면 한다.

7) 사실혼 배우자와 형제

(내담자 60대 여성)

10년 전 재혼으로 만나 혼인신고 없이 살던 중 남편이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었다. 내가 모든 병원비를 내고 보호자가 되어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의 누나가 성년후견인 청구를 하여 후견인이 되었다. 나는 남편의 동생을 증인으로 세워 혼인신고를 하였다. 내가 남편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방법은?

3. 정신적 제약의 원인에 따른 구분

1) 지적장애

(내담자 70대 남성)

큰아들이 39세인데 지적장애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결국 2년 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로 엄마가 나쁘다는 말을 자주 한다. 내가 아들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2) 뇌출혈 등 뇌병변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이 1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10년 전 또 쓰러져 수술을 받았는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인지장애가 있어 의사표현도 힘들어하고 반쪽이 마비되어 혼자 움직일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다. 성년후견제도가 있다고 하여 알아보러 왔다.

3) 고령에 따른 치매

(내담자 80대 여성)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년정도 되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약복용을 중단해서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치매를 앓고 난 후부터 내게 폭언과 폭력을 자주 행사한다. 남편 앞으로 들어오는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는 생활비도 주지 않고 무조건 내게 포악을 부려댄다. 딸이 남편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으면 한다.

4) 정신병

(내담자 60대 여성)

남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더욱 악화되어 의사소통도 어렵고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곧 병원에 입원시킬 예정인데 남편 앞으로 건물이 있어 관리할 사항이 많다. 남편 명의의 건물을 관리하고자 내가 후견인이 되려고 한다.

5) 건강악화에 따른 기능 저하

(내담자 40대 남성)

아버지가 폐암 수술 후 갑자기 쓰러져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고 상황이 악화되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아버지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내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방법은?

6) 사고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 크게 다쳤다. 정신적 능력은 크게 퇴화된 상태이고 병원에서 앞으로도 온전하게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남편의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대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라고 한다. 내가 되는 방법은?

4. 청구 목적에 따른 구분

1) 부동산 담보 대출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이 작년에 가게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지금까지 치료비도 6천만원 이상 들어갔고, 가게 일을 못하니 생활도 막막하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가봤더니 집이 남편 명의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한다.

2) 동산 등 재산 처분

(내담자 60대 남성)

수년 전 나와 딸이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현재 딸이 장애를 갖게 되어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못한다. 차를 팔려고 하는데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어 처분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예(적금) 관리

(내담자 60대 남성)

아내가 쓰러져 몇 번의 수술을 받았는데도 의식이 없다. 아내 통장의 잔고를 찾아 병원비 등에 보태려고 하였더니, 남편이어서 아내 계좌나 비밀번호를 알 수 없다고 한다.

4) 보험금 수령

(내담자 70대 남성)

아들이 얼마 전 사망했다. 예전에 아내가 아들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아내로 지정해 놓았다. 그런데 아내가 현재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내가 아내의 후견인이 되어 보험금을 수령하고 싶다.

5) 재산 보전

(내담자 30대 남성)

어머니가 재혼했는데 1년 전부터 의식불명이 되어 병원에 입원 중이다. 어머니 명의로 집이 두 채 있고 보험금도 수억 원에 달하는데 계부가 임의대로 돈을 찾아 흥청망청 쓰고 있다. 또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릴 것이라며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고자 내가 후견인이 되려고 한다.

6) 신상보호

(내담자 50대 남성)

누나가 2달 전 사망하였다. 누나에게는 올해 22살된 딸이 있는데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다. 생전에 누나가 한 남자와 사실혼관계로 살았는데 그 사람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 누나가 사망한 후 현재 조카와 그 남자가 함께 살고 있는데 조카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이 된다. 내가 조카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7) 개호

(내담자 50대 여성)

언니 두 명이 어머니를 나와 동생이 만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 중 한 명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했으나 얼마 전 어머니가 요양원에 보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 재산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라도 내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돌봐드리고 싶다.

8) 빚 청산

(내담자 70대 여성)

남동생이 10여 년 전에 연대보증을 선 건이 있다. 그런데 3년 전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남동생의 파산면책신청을 하고 싶은데 내가 후견인이 되면 할 수 있는가?

9) 소송개시

(내담자 60대 여성)

작년에 남동생이 사고를 당하였다. 의식이 없어 병원에서 수소문하여 내게 연락을 해왔다. 그래서 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가며 동생을 몇 달 간 돌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과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 여자가 나타나 한 달 전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재산을 노리고 한 것 같은데 혼인무효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진영 상담위원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신탁제도**

배 인 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전문센터장

I. 문제제기

최근 30억 원 정도 재산이 있는 조현병 환자가 성년후견 제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다. 미혼으로 남편과 자식이 없는 김모(56)씨는 20대 초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 2012년 유일한 가족이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친가와 외가쪽 친척들이 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을 할 뿐 김씨를 돌봐주지 않았다. 김씨의 신용카드대금과 아파트관리비, 세금 등이 체납되었다. 그런 중에 김씨의 사촌동생(45·호주 거주)이 먼 친척(62세)을 후견인 후보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2015년 11월 법원에 청구했고, 서울가정법원은 1년 여간의 장고 끝에 지난해 위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후견인을 청구인이 추천한 친척이 아닌 성년후견 전문가그룹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로 정하고 신상과 재산 보호를 다 맡기며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결정이었다. 그러자 청구인이 성년후견 심판청구를 취하하였

다. 이로 인해 임시후견인이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역시 후견인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제 김씨는 입원치료와 관리비 등을 처리할 수 없고, 김씨의 (BMW)차량과 현금을 가져간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와 부친이 남겨놓은 재산의 확인도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 기사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임의로 취하하여 피후견인이 방치되지 않도록 일정한 경우에 심판청구의 취하를 제한하자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발제자는 위 기사를 보면서 상당한 재산을 가진 김씨가 왜 방치되었는지 안타깝고 궁금했다. 부모가 사망한 때인 2012년 무렵은 아직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다. 부모로서는 거의 대부분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한편 자식이 생존하는 동안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사후에 부모처럼 자식을 챙겨줄 제3자를 모색하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다.

** 지면관계상 각주는 모두 생략하였으며, 본소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지난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한 사례를 소개한다. 사안 내용의 이렇다. 망인은 2010. 12. 3.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3급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처와 2003년에 출생한 딸이 있었다. 망인은 2010. 1. 27. 망인과 가족들이 거주하던 건물의 임차보증금과 지방에 소재한 토지 3필지를 목사의 처인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며칠 후에는 피고가 정신장애를 가진 망인의 처를 평생 보살피며 망인의 딸을 교육하고 결혼할 때까지 책임지는 대가로 망인의 전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망인 사망 후 각 토지를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절차가 진행되게 하였고, 임차보증금은 반환받아 모두 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망인은 소유하던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데 피고는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소비하였으며 망인의 처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등 금융재산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까지 인출하여 소비하였고,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처와 딸)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고 기초생활급여를 처의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원고(처)의 동생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직원 2명과 가서 원고들을 데리고 나왔다.

제1심 법원은 망인의 유증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가 망인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융재산(유족연금과 기초수급급여 포함)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들을 부양하면서 지출한 관리비, 도시가스 난방비, 최저생계비, 돌봄서비스 비용, 치과치료비 등의 상계를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을 부양하는 대가로 3필지 토지 및 임대차보증금을 유증받았으므로 이는 통상의 부양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 외에 유류분반환을 명하였다.

이 외에 지난 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자신의 친여동생이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여, 44세)가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 2필지를 빼앗으려고 폭행하고 집요하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오빠에게 공갈 및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요보호자를 위한 적절한 재산 관리나 승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본인의 복지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본인의 사망 이후에는 요보호자의 복지를 위한 재산의 승계 및 관리를 위해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제도와 유언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도는 나름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위 2가지 필요에 완전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탁이 거론된다. 앞서 첫 번째 사례에서 만약 부모가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금융기관 등을 수탁자로 정해 일정한 목적에 맞게 금전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관리를 위탁하였다면 김씨는 기사와 같은 서글픈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씨의 친인척들이 김씨의 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신탁의 일반 구조에 대해 검토하고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관리에 유용하다고 평가받는 신탁(이를 '후견신탁'이라고 이름 붙여본다)을 중심으로 그러한 신탁설정이나 설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II. 신탁의 법적 구조

1. 신탁의 설정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를 정하여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고, 재산을 이전받은 수탁자는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가 지정한 자(수익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본인(위탁자)의 의사에 따라서 신탁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고, 또 신탁을 설정하기로 결심한 경우 그 시기와 내용도 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 방식도 계약, 유언 또는 신탁선언에 의하여 자유로운 설정이

가능하다.

본인 생전에 신탁이 설정되도록 할 것인지(계약신탁) 아니면 사후에 신탁이 설정되도록 할 것인지(유언신탁)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수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즉 수탁자를 친척으로 할 수도 있고, 변호사 등 전문가나 수탁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신탁기관을 정할 수 있다. 수익자도 본인이 될 수도 있고(자익신탁), 본인이 아닌 제3자를 정할 수도 있다(타익신탁).

수탁자의 신탁재산 관리방법이나 수익의 지급방식도 위탁자 본인이 신탁행위로 정할 수 있다. 수익의 향수에 기한이나 조건을 붙이는 방식, 여러 가지 변수를 조합한 혼합방식도 가능하다.

2. 신탁재산의 독립성

위탁자의 재산이 신탁의 설정으로 신탁재산이 되면 위탁자 및 수익자로부터 독립되어 수탁자에게 완전한 재산권이 이전된다. 이로써 ①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가지므로 본인(또는 요보호자인 수익자)의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로부터 재산관리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위탁자나 수익자가 재산을 빼앗길 위험도 예방할 수 있다. ③ 위탁자나 수익자가 도산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신탁법 제22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됨은 물론(신탁법 제22조 내지 24조), 신탁법 22조의 해석상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되지도 않는다고 해석된다.

한편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수탁자가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위탁자(또는 수익자)를 배제하고 권한을 남용할 위험을 걱정할 수 있다. 이런 위험에 대응하여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수탁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신탁법 제32조, 33조) 뿐만 아니라 신탁법 제34조 이하에서 의무와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노후대비 또는 사후 요보호자의 복리를 염려하는 자는 신탁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생전, 사후 재산관리를 위하여 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

III. 후견기능을 가진 신탁

1. 유언대용신탁

가. 법률의 규정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 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유언대용신탁의 의의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으로 위탁자가 자신의 생전 의사표시로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유증과 법률효과가 같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의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또는 유언신탁)에 비해 간편하고 융통성 있다.

미국의 유언대용신탁은 유증자가 그에게 유리한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임의로 유언장에 삽입할 수 있는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신탁법은 타익신탁 위주로 발달되어 있고, 신탁계약이 개입되지 않는 점 때문에 신탁관계에서 위탁자의 지위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신탁의 내용을 수정할 권리(a power to modify)나 신탁철회권(a power to revoke)을 유보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지속적으로 신탁에

개입할 수 있다. 특히 위탁자의 신탁철회권이 유보된 철회 가능신탁은 유언의 대응으로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다. 유언대용신탁의 종류

1) 유언대용의 생전신탁

본인(위탁자)의 생전에는 수익자가 따로 있고(위탁자가 될 수도 있다), 수익자로 미리 지정된 자(“사후수익자”)가 본인의 사망 시점에 비로소 수익자가 된다(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은 신탁은 생전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요보호자로 함으로써 생전 및 사후 재산 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유언신탁(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도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에는 신탁 자체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반하여,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은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여 존재하는 생전신탁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생전신탁

본인(위탁자)의 생전에는 수익자가 따로 없고 사후수익자가 유일한 수익자이지만,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신탁이다(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유형의 신탁으로 사후수익자를 요보호자로 하고 사후 재산관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본인(위탁자)이 사후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수익자의 변경

위탁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익자로 지정된 ‘사후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신탁행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위탁자에게 수익자변경권이 인정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규정이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에서 인정되는 수익자변경권자는 본인(위탁자)에게

한정되므로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에만 행사가능하고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익자 변경이 불가능하다. 본인(위탁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수익자 변경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이 심신상의 제약 등으로 적절한 수익자변경권 행사·불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또 본인 사후에도 수익자변경권을 유보하고자 한다면, 신탁행위로 본인 이외의 자를 추가적 또는 예비적인 수익자변경권자로 지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마. 유류분반환청구권과의 관계

1)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는 상속인 또는 근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형태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유류분제도에 의해 법률상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유류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유류분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하여 ① 상속 제도는 생존가족에 대한 부양의 계속이라는 점, ② 이미 상속분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녀들의 상속액이 유증 등으로 왜곡되는 경우 자연적 인정에 배치되고, 가족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피상속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의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다면 이는 사회에 부담이 되므로 사회 보장적인 측면에서도 유류분 제도는 필요하다는 점, ④ 상속재산의 본질은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하는 상속인들의 유형, 무형의 재산이므로 그 일부를 당연히 자연법적으로 취득할 권리가 상속인들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가치증가와 유언 및 사인 처분 등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하여 유류분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학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자녀는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후 상속재산으로 자녀를 부양해야 할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 현대사회에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

가 점차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족관계 그 자체로부터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을 구하는 논거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되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류분의 기능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높다.

민법은 피상속인에게 유언의 의한 처분자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에 대한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양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은 얼마든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인인 유류분권리자는 상속분 중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권리자의 이러한 권리는 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장된다. 위탁자가 생전신탁이나 유언신탁을 설정함으로써 위탁자의 재산 내지 유산의 전부나 일부가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과정에서 유류분의 침해와 그 반환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현행 신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신탁법 개정을 통해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에도 역시 유류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문제다.

2) 유류분산정 재산에 신탁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민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13조 제1항). 신탁의 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신탁계약으로 수탁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견해가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신탁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그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신탁계약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 무상으로 이전되었고, 특히 수익자가 무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익권을 포함하여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어 소개한다. 즉,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게 되면 그 재산은 그 때부터 수탁자의 소유이므로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이 아니다. 또, 민법 제1113조가 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의미하는데,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할 때 사후수익자에게 실제로 이전된 재산은 아무 것도 없으므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수익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없어 증여재산도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사후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탁계약시 수익자에게 사후수익권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9조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 이론과 조세법리가 별개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증법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신탁재산은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으로, 신탁계약으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전부 귀속된다면 신탁재산을 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수익자에게 사후 수익 수익권만 귀속된다면 상속개시 당시 그 수익 수익권을 평가하여 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유언대용신탁은 유증자가 그에게 유리한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임의로 유언장에 삽입할 수 있는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과반수 이상의 주에서 철회가능신탁의 위탁자가 철회권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라도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재산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철회가능신탁의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겸인대상재산에 포함

시키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유언대용신탁의 설정으로 신탁재산은 이미 수탁자에게 이전되었지만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한때부터 비로소 수익자가 되고, 위탁자는 사망시까지 신탁을 종료시킬 권리를 통하여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피상속인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참고적으로 소개한다.

3)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을 누구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뉜다. 즉 상대방이 수익자라는 견해와 수탁자라는 견해다.

전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향수하는 자는 수익자이므로 유류분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신탁재산의 법률상 소유자인 수탁자가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고, 수탁자가 이미 신탁재산을 수익자를 위해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신탁재산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수익자에게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상대방이 되어야지만, 수익자와 수익권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수익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신탁재산의 명의자인 수탁자를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유류분 침해가 발생되어 수익자의 원본 수익권 또는 수익 수익권이 변경되어야 한다면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교부하고, 다시 수익자는 유류분 채권자에게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수익권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수탁자를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는 신탁계약이 변경되거나 조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4) 유류분의 반환 방법

이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관계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여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유류분 반환의 상대방이 수익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수익자는 원본수익자가 아닌 한 원물인 신탁재산의 반환을 할 수 없고,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수익권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 반환의 상대방이 수탁자라면 신탁재산의 반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신탁계약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이때에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가액반환만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2.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

가. 의의

후견제도지원신탁은 후견인이 수행하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사무와 신상보호사무 중 상대적으로 미흡한 재산관리사무를 신탁제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률상의 제도가 아니고 성년후견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원의 후견인 감독업무가 증가하고 후견인에 의한 부정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책으로 2011년 2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이 후견제도지원신탁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나. 신탁의 성립

후견제도지원신탁은 본인(피후견인)의 금전재산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성년후견인이 관리하고, 나머지 재산을 신탁은행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관리하는 구조다.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이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을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전문

직 후견인이 선임된다. 전문직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장래 생활설계에 필요한 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한 후 사임하며, 친족후견인 등에게 후견사무를 인계한다. 즉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문직 후견인(가정법원에 의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을 선임하여 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장래 생활에 필요한 예상비용을 계상하고, 신탁재산으로부터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후견사무를 담당하는 친족후견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수탁자와 체결한 후 사임을 하면, 그 후에는 친족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인계받아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후견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후견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하거나 입원비 등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출할 수 있는데, 이 때 가정법원이 발급하는 지시서가 필요하다.

다. 문제점

우선 후견제도지원신탁은 통상 지출을 넘는 부분의 재산을 신탁은행이 관리하면 나머지 후견업무를 친족후견인이 할 수 있는 후견사건에 적합하다. 따라서 친족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친족후견인 후보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 후견인이 계속 선임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실익이 없다. 또 피후견인의 증상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평가되어 통상적인 지출이 예상 가능한 경우에 활용된다. 만약 피후견인의 증상이 수시로 변화되는 것이 예상되고, 이와 함께 금전재산 사용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평가되면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이용될 수 없다. 또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채권으로는 이용할 수 없어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후견제도지원신탁을 이용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후견제도지원신탁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피후견인이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상속하는 것으로 변질 될 수 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

리를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재판부에 설명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업무를 태만히 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예를 들어 주거를 개조하면 피후견인의 생활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한데도 정기교부액을 변경하거나 신탁계약 해지를 위해 가정법원에 보고서나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하지 않거나, 또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상속인이어서 주거를 개조하는데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을 꺼린다면 후견제도지원신탁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후견제도지원신탁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전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와 후견제도지원신탁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성년후견제도의 본질과 기본 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다. 본인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현재 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재산이 예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채권인 재산도 포함되고, 수탁자가 금융기관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후견인의 재산관리가 미흡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장애인 신탁제도

가. 현황

현행 장애인 소득제도는 절대빈곤층이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경제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는 금액 면에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다양한 개별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신탁제도는 신탁계약을 통해 유연한 제도설계가 가능하고, 부모(위탁자)의 사망 등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장애

인의 개별적인 수요를 고려한 이른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신탁제도는 기본적으로 재산관리제도이므로 신탁재산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절대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이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중산층의 경우에는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는 장애인신탁은 상증법 제52조의2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를 활용한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이 유일하나 그 실적은 미비하다.

나. 법률규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 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문제점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여 직계존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 설정하고, 이를 신탁업자가 관리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그런데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하면 증여세 면제액 한도액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만큼 많지 않고, 증여세면제요건으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원금인출이 제한되어 신탁의 효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신탁소득인 신탁재산의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고, 자익신탁방식만 인정하여 발달장애 등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신탁계약체결능력에 문제가 있으며, 증여자의 범위와 수탁가능재산을 제한하여 활성화 환경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신탁상품을 활용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신탁재산이 필요(보통 비과세한도액인 5억 원)하고, 신탁재산의 관리에도 신탁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하여 고소득층이 아닌 경우 신탁설정에 따른 비용이 신탁설정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탁이 가지는 최대 장점은 탄력성이 있어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더불어 당사자의 의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신탁법에서 두터운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라. 장애인신탁제도의 활성화 방안

1) 고소득층의 활성화 방안

자산이 많은 장애인이 현행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여세 면제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재산에서 원금인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신탁이 설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데, 비과세 한도인 5억 원으로 얻을 수 있는 월 금융수익을 감안하면 부모나 친족이 장애인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과연 이익인지 고민스러울 것이다. 더구나 장애인이 받는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적어도 비과세되는 한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물론 장애인이 이미 주택과 기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를 통하여 기본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이라면 이런 혜택이 특혜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장애인 자녀를 위해 5억 원을 애써 마련한 부모를 상정해 보면, 이런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 재원을 장애인 자녀가 생전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억 원의 이자만 사용하고, 원본을 상속하도록 강제할 이유가 무엇인가.

2) 저소득층, 중산층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원본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해 낼 수는 있겠지만 반대급부로서 상당한 신탁관리비용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특별수요를 충족할 물품 및 서비스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사회 복

지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수익자=장애인에게 제대로 공급되게 하는 일을 담당하기는 어렵다. 비과세 한도보다 낮은 1억 원 또는 2억 원 이하의 소액으로 신탁을 설정한다면 신탁관리비용 충당도 힘들 수 있는데 신탁재산으로부터 원금 인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위와 같은 정도 금액을 장애인특별부양신탁 원본으로 사용할 아무런 장점이 없다.

마. 입법론

1)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을 이용하려면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요보호자에게는 신탁업자가 아닌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집단, 비영리법인이 수탁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많다. 장애 전문 비영리법인이 수탁자가 되면 수익자인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조달해 주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비영리법인과 신탁업자가 공동으로 수탁자가 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신탁을 영업으로 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수탁자가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보수를 받지 않고 비용상환에 그친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비영리법인이 보수를 받지 않고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 의문이다.

따라서 상증법상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외에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장애 전문 비영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⑤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증법상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 부분을 확대하거나 또는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 의료나 주거 개조 등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본을 인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원본 일부를 사용하여 거주용 부동산의 일부를 수익용 부동산으로 개조하는 등 수익자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수익자의 재정을 불안하게 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상증법상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을 자익신탁이 아닌 타익신탁 즉, 부모가 위탁자로서 장애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탁계약체결능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년후견심판을 받고 후견인이 권한 범위 내에서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을 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별론으로 한다.

위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상정할 수 있다. 부모는 수탁자 비영리법인과 5억 원의 재산에 관하여 장애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비영리법인은 신탁원본을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탁원본을 활용하여 수익자가 생존하는 동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을 관리한다. 주택 또는 금융재원을 활용한 즉시연금의 형태도 가능할 것이다. 수탁자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비용을 정액으로 정하여 상환 받는다. 일종의 후견인 보수와 같은 개념이다. 공익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고,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신탁재산 전부가 즉시연금 등의 형태로 전환된다면 재산관리에 수반되는 수탁자의 업무가 거의 없고, 수탁자의 업무는 신상 즉 원본을 찾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으로 축소될 것이므로 보수 역시 감소될 것이다.

나아가 집합신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장애인 문 비영리법인은 수익자를 공동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동산을 수익부동산으로 활용하여 수익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수익자의 사망으로 신탁계약이 종료될 때 잔여 신탁재산이 있다면 일정부분을 공익에 기부하도록 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유류분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피상속인이 요보호자를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계약이 상증법상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이거나 유언대용신탁인 경우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세 면제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만약 6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던 부모가 장애자녀를 위하여 5억 원을 특별목적 신탁으로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면 권리남용인 것인가?

IV. 마치면서

신탁은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미 후견적 기능을 수행한다. 신탁을 성년후견제도와 연결할 수 있다면 더욱 피후견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제자는 신탁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유류분 제도와와의 관계에서 법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신탁을 세심하게 설계하면 요보호자가 안전하게 재산을 승계하고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를 갖고 생활능력이 없는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상당한 범위(예를 들어 장애인특별신탁에서 정한 5억 원 이하)의 재산을 유언대용신탁으로 설정하여도 사후에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소극적이 될 수 있다. 유류분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특별수요신탁을 설정하는 데 증여한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다른 부부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치 높아져

- 일 시 : 2017년 3월 25일 ~ 26일
- 장 소 :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
- 참석자 :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탁자 부부 20쌍과
자녀 15명을 포함 모두 55명
- 강 사 : - 류분순(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교수, 한국댄스테라피협회 회장)
- 이서원(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부부갈등문제 진단 전문상담가)
- 박운유 · 정지혜(미술심리치료전문가)
- 진 행 : 차연실 · 복미영 상담위원 외 자원봉사자 6명

I. 프로그램

1. 첫째 날 저녁강의

(1) OPENING

류분순 교수는 자신의 화를 가라앉혀 평정상태에서 타인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올바른 호흡법을 배워보라며 첫째 날 저녁 특강을 시작하였다.

(2) 부부가 함께 긴장을 풀기 위한 활동

손뼉을 치는 가벼운 동작부터 배우자의 몸을 가볍게 터

치하며 긴장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반복하면서 부부가 함께 긴장을 풀 수 있는 동작을 해보았다. 동작을 반복하면서 서로 어색하고 냉랭했던 분위기가 점차 온화해지고, 딱딱했던 표정도 한층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부부간의 대화

1)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 이야기하기 = 듣기 연습

부부가 마주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활동은 듣는 연습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패턴이 아닌 다른 패턴을 만들기 위한 연습으로, 연습을 통해서 타인이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행동했다며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이 어떠했고 그로 인해 상처받았을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

2) 몸으로 대화하기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 뒤에 있는 상대방의 본심을 읽어야 한다. 내가 변해야 상황이 변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나 스스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자신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조각 만들기 놀이를 부부가 함께 해보았다.

3)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호흡을 깊게 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원을 크게 그린 후, 손을 모아 상대방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잠시 머물러서 다시 호흡을 깊게 하였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배우자를 존중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이어서 부부가 함께 출 수 있는 왈츠를 배워보았는데 처음 배워보는 동작에 실수연발이었지만 점차 모든 동작을 소화하며 크게 웃고 즐거워하면서 첫째 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2. 둘째 날 저녁강의

(1) 우리 돌아갈까 처음처럼

1)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서원 소장은 자신이 처음으로 주례를 맡았던 결혼식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의 포문을 열었다. 행복이란 한 순간의 짜릿한 경험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분 좋은 느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배우자가 어떤 점에서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주었는지 또는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모습을 이루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 당신이 부부상을 받는다면

부부생활에서도 배우자의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결혼생활 동안 상을 받을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상장에 적어보는 활동을 가졌다. 또한 상담소에서의 상담과정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난 한 부부의 사례를 들어보았다.

3) 우리 주고받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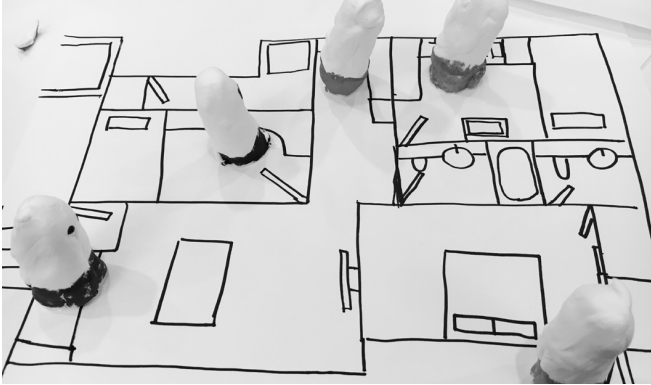
내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배우자로부터 받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지 적어보고 두 부부씩 모습을 이루어 이야기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 한 남편은 아내에게 받고 싶은 것으로 하루 한 끼 아내의 정성이 느껴지는 밥상, 나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의미로 주는 작은 용돈,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꼽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경제력, 몸과 마음, 믿음과 행복이라고 대답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서원 소장은 많은 부부에게 배우자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대부분 ‘내 감정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한다고 말하면서, 배우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

이번 부부캠프에서도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주제 하에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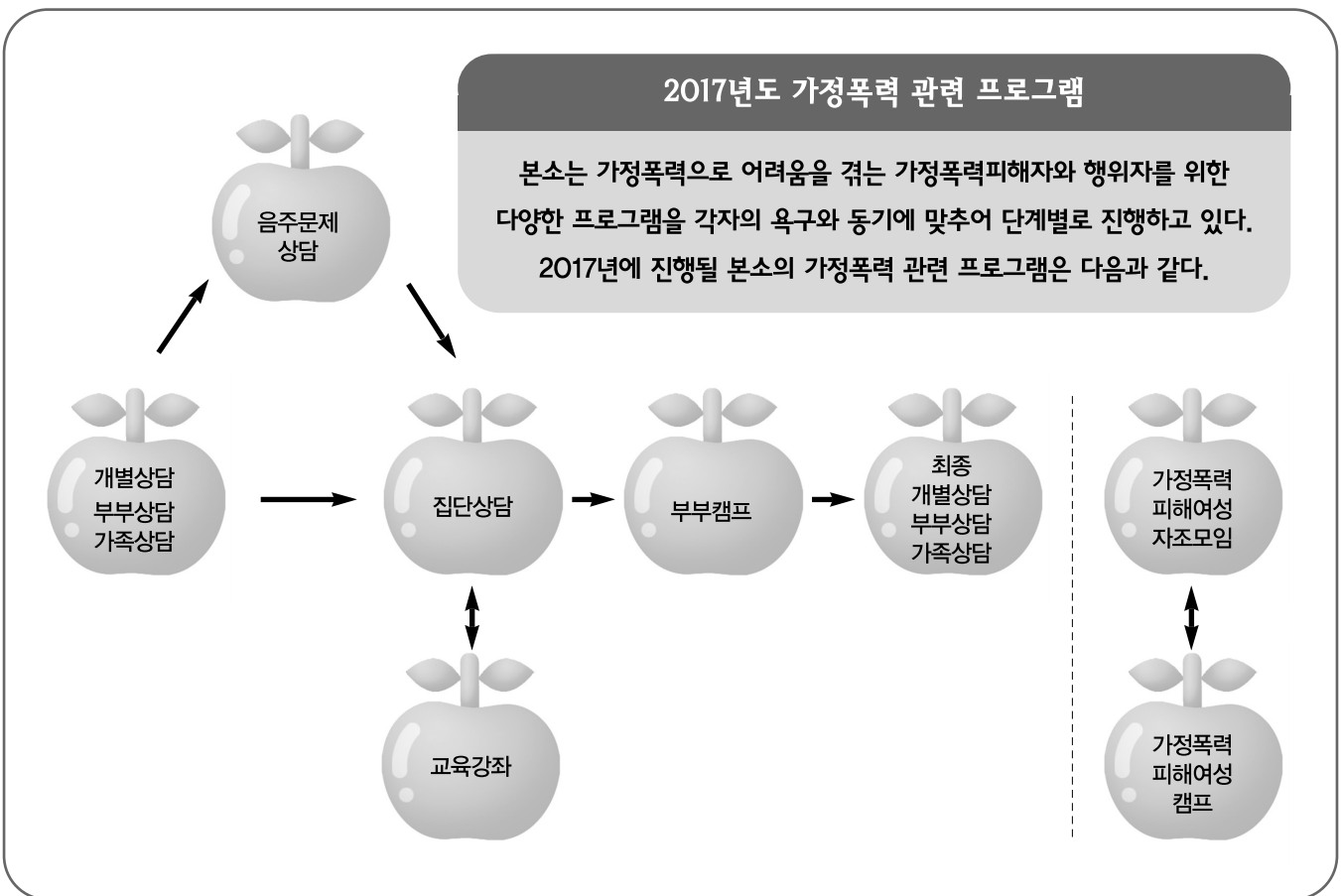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영유아 대상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보육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다양한 신체 및 미술활동을 통해 참석한 영유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도왔다. 또한 아동 대상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내면의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아이들 스스로 적절한 이완과 해소를 경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II. 정리

이번 캠프에서는 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 호흡법을 통해 스스로가 먼저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부부가 서로 몸동작을 통해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처음 캠프 장소에 들어설 때의 부정적이고 경직되어 있던 눈빛과 표정이 점차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상담 프로그램 참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부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다른 참석자들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캠프를 통해 갈등으로 경직되었던 부부의 마음이 열리고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거쳐 평생 아끼며 함께 하고자 했던 첫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차연실 상담위원





저는 최근 건망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인 A는 도박을 좋아하고 낭비벽이 심하여 가족들과 모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혼자 생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병세가 심해져 제가 혼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차남인 B에게 저의 재산에 관한 모든 관리를 맡기고 싶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A가 자신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B가 하는 재산관리를 훼방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B에게 제 재산 관리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민법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 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임의후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참조).

임의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참조). 임의후견계약에 대한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계약은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참조).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와 차남인 B가 공증사무소에서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후, 추후 귀하의 증세가 악화되어 차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면 차남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선임하면 위 후견계약의 내용대로 차남이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감독 켄 로치

출연 데이브 존스, 헤일리 스카이어, 샤론 퍼시



평생 목수로 성실하게 살아온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병 때문에 일을 한참 쉬어야 한다. 원래 질병 관련 수당을 받고자 했지만, 그를 위해 거쳐야 하는 관공서의 복잡한 절차는 평생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관료와 마주칠 일도 없었던 다니엘을 번번이 좌절에 빠뜨린다. 수당 관련 검사를 하는 정부 소속 의료진은, 다니엘이 일을 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질병 관련 수당을 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니엘은 사비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찰 기록을 봐달라고 항의하지만, 국가는 ‘당신은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업 급여를 타고 싶다면 구직 활동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고 매정하게 결론 내린다. 우연히 비슷한 처지의 젊은 싱글맘 케이티를 알게 된 다니엘은 케이티와 그녀의 두 아이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2016년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영국의 거장 켄 로치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21세기의 가난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단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는 혼자 세상에 남겨졌다. 아내는 얼마 전에 죽었고, 둘 사이에 자식은 없었다. 한국에서 흔히 기대되는 ‘가족 복지’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공공의 복지, 국가가 마련해준 제도에 의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 제도는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다니엘 블레이크는 생존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끊임없이 자신이 ‘일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자신의 무능력을 입증해야만 한다. 세상에 혼자 남은 이 병든 노인은 실제로는 무능력하지 않은데도 국가로부터 무능하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 가난은 세대의 문제라든가 빈부격차의 양극화로만 설명될 수 없다. 다니엘 블레이크가 직계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병까지 덜컥 걸린 노령자로서 가난의 나락에 떨어진다면, 아직 어린 20대의 싱글맘 케이티의 상황도 암담하긴 마찬가지다. 그녀가 겪는 가난은, 개인의 성실성이나 노력으로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여지조차 차단한다. 케이티는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고르다가 갑자기 이성을 잃고 캔을 따서 손으로 퍼먹은 다음, 놀란 직원에게 “정말 죄송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하고 울먹거린다. 어차피 몇 분 뒤면 케이티의 손에 ‘공짜로’ 들어오게 되었을 텐데, 그 몇 분을 견디지 못하는 굶주림의 굴욕. 타인의 시선과 최소한의 염치 혹은 품위라는 마지노선을 순식간에 넘어버리게 되는 급박한 빈곤. 케이티가 며칠을 굶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케이티는 게으르지 않다. 불성실한 아이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대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시간제 청소부 일을 부지런히 하고, 지친 몸을 끌고 집에 와서도-정부에서 제공한 그 집, 무너지기 직전의 그 집, ‘네게는 그래도 감지덕지일 집’이라는 듯 내던져진 그 집-자꾸 떨어지는 화장실 타일을 다시 붙이고 들어오지 않는 전기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든 아이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나 여기서 갈등이 발생한다. 그녀는 시간제 청소부 일과 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과 임신 때문에 그만둔 학업을 재개하려는 노력 사이의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걸 절감한다. 케이티는 자신에게 삶의 가능성이, 어떤 미래가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을 아직 인정하기 힘들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 난관을 극복하려 노력하지만, 이 빈곤의 그림자는 너무나 길고 짙다. 그리고 아주 끈질기며 아주 빠르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낙관하고 싶었던 케이티조차 무너뜨릴 정도로.

위에 언급한 푸드뱅크 장면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순간. 문 앞에 줄지어 선 사람 중에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늙고 병든 노숙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케이티보다 더 어린 소녀도 불만과 상실에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주인공은 노년으로 접어든 남자지만, 그의 주변을 에워싸는 빈곤의 손아귀는 어린아이부터 10대 청소년까지 빈틈없이 포박한다. 다니엘 블레이크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편안하게 느껴왔던 '지난 세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음을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고 충격을 받았다면, 이 젊은 이들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세상'의 전망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살고 그들이 아는 세계는, 처음부터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타먹을 수밖에 없는 극도의 빈곤의 테두리 안에 머무른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켄 로치가 오랜 세월 만들어온 사회 비판적 영화들 중에서도 '가장 분노에 찬 영화'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켄 로치는 영화 내내 관객들에게 당신들은 왜 분노하지 않느냐고 질문한다. 당신들이 기억하는, 혹은 당신들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빈곤의 풍경과 지금의 현실은 정말 다르다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탈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당신도 그 굴레에 어느 순간 포박당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그 비합리적인 가난의 굴레를 바꾸자고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 ● ● 고 맵 습 니 다

2017년 3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박선화, 유문숙, 한정희,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서암, 김영주, 김지후, 김태주, 김형석, 라은정, 류은아, 박수열, 박은주, 박효선, 윤원섭, 이혜민, 임지운, 장세호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재희, 김진아, 심미숙, 이승주, 임주용, 전성배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김영진, 사대진, 임채룡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김혜지, 이윤복, 변수정, 장윤서, 신수현, 배소희, 손지희, 최다은, 이민주, 김수민, 박민주, 서운이, 정지현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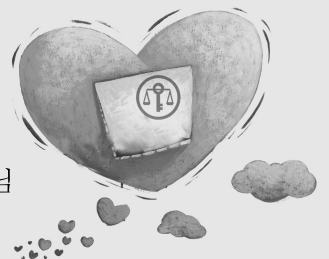
후 원

• 평생회원이 되신 분

김병후, 천다라, 정다혜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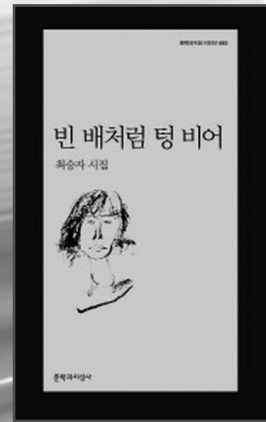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빈 배처럼 텅 비어

최승자 시집



최승자
문학과 지성, 2016

다시 시를 읽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시와 소설을 잘 읽게 되지 않았던 기간이 길었다. 특히 시가 그렇다. 다른 이들은 어떠한지 몰라도 내게는 직장과 육아와 살림이라는 일상의 비중이 너무 컸던 시기여서 그랬나 보나 생각한다. 이 시기를 나는 스스로 ‘문화실조의 시기’라고 부르고 있다. 집에서 사무실로 출근했다 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나날의 연속, 휴일이면 평일에 놀아주지 못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애들 위주의 공연, 놀이로 시간을 보냈다 - 내가 본 샘터 파랑새 극장의 어린이 연극이 모두 몇 편이며, 어린이 관람가 영화는 또 얼마나 많았던가 - 그 때에는 극장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 한 편 보는 게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다른 책들은 좀 읽었지만 시집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다시 시집을 산다. 이성복과 최승자의 새 시집을 사고 잃어버린 황동규, 마중기의 시집도 산다.

스무 살 무렵에 읽었던 최승자의 시집 <이 時代의 사랑>과 <즐거운 日記>를 먼지 앉은 책장 맨 아래 칸에서 찾아낸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 서른 살은 온다” <이 시대의 사랑>에 있던 ‘삼십세’의 첫 구절을 수도 없이 외우면서 그 나이 언저리를 지나왔다.

최승자 시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을 아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면 지금도 가끔 중얼거리는

“삶의 의미 없음에 대한 자각과 삶의 의미부여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쓴 이성복 시인이 있지만, 무엇인가 최승자 시인에 대해서는 이 시간들을 같이 살아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있다. 내가 시를 읽지 않았던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시인은 두 권의 시집을 냈고 나는 2016년에 나온 가장 최근의 시집과 그 전 2010년에 나온 시집을 샀다. 2010년의 시집은 <쓸쓸해서 떠나면>이고 가장 최근의 것은 이 책 <빈 배처럼 텅 비어>이다.

“내 손가락들 사이로/ 내 의식의 층층들 사이로/ 세계는 빠져나갔다/ 그러고도 어언 수천 년 빈 배처럼 텅 비어/ 나 돌아갑니다” 시집의 첫 번째 시 ‘빈 배처럼 텅 비어’를 읽을 때 그 쓸쓸함과 도저함이라니.

그리고 끝에서 세 번째 시 ‘슬픔이 새어 나와’를 읽으며 정말 슬펐다. “슬픔이 새어 나와 내 영원을 적시네/ 회색 하늘 속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이 무슨 슬픔이 새어 나와/ 내 영원을 적시네”

아울러 시집에 함께 실린 김소연 시인의 발문 ‘우리 시대의 유일무이한 리얼리스트’를 통해 시인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

시인과 나와 시대가 모두 조금씩 저물고 있다.

이 숙 현 편집부장

상·담·소 · 소 · 식



2017년도 정기총회

본소는 지난 3월 23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차명희 이사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총회는 개회, 국민의례, 인사 말씀, 전회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안전, 폐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전으로는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관련사진 2면)

‘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심포지엄 개최

상담소에서는 지난 3월 16일 ‘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2017년 첫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소에서는 2007년 ‘성년후견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운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3년 7월 ‘성년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사회복지제도의 수혜 그리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로써의 성년후견제에 대해 아직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상담소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미 후견적 기능을 하고 있는 ‘신탁제도’와 ‘성년후견제도’를 연계하여 피후견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 및 구체적인 운용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본소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용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본소의 ‘성년후견 상담 분석’ 발표에 이어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전문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토론자로는 조성혜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용신 판사(서울가정법원), 배정식 센터장(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창훈 변호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 결정센터 부센터장)등이 참석했으며, 관계기관 및 관심 있는 이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관련사진 2면)

교육부, 김병후 원장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3월 30일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 김병후신경정신과)의 강의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 째 열린 이번 강의의 주제는 「뇌의 속성과 다름」으로 30대부터 70대까지 총 52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강의에서 김병후 원장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과정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여, 움직임을 통해 뇌가 발전하고 뇌가 발전하면서 감정을 진화시키게 되므로 나의 정신과 신체상태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신체에 무리한 자극을 주게 되지만, 긍정적인 감정은 고통을 완화시키고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되므로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기를 권하였다. 참가자들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뇌와 감정의 작용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다음에 이어질 강의가 기대된다고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법교육

- 3월 21일 학교폭력예방교육1-궁내초
- 차연실
- 3월 22일 학교폭력예방교육2-부천초
- 황현정변호사
- 3월 23일 학교폭력예방교육3-국수중
- 김진영

- 3월 24일 학교폭력예방교육4-대전정보산업고
- 조은경



- 3월 28일 학교폭력예방교육5-비봉초
- 차연실
- 3월 30일 학교폭력예방교육6-하길초
- 차연실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박소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오동준, 권혁채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3월13일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한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상 평등권 제고 방안' 착수세미나에 참석하였다. 29일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된 양육비이행관리원 전문가 자문단 위촉식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3월 31일 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정책자문위원들과 함께 수서경찰서 현장방문을 하였다.

곽배희 소장, 서울회생법원 개원식 참석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3월 2일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7일에는 본소의 2016년 상담통계와 관련하여 대전 MBC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으며, 13일부터 2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본소에서 제작하는 이혼 전 교육 동영상의 구성회의에 참석했다. 28일에는 새로이 제작되는 상담소 홍보 영화를 위해 인터뷰 촬영을 했다.



지·부·소·식

강릉지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총 4회(1,595명) 실시하였다. 3월 8일 정기총회를 실시하였다. 13일, 2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협의이혼부모 자녀양육안내 및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구리지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 총 4회, 형사조정 총 3회를 실시하였다. 이경숙, 정수경, 김효경,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3월 2일, 9일, 21일, 23일, 3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 자녀양육안내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6일 법원, 군산시청, 본 상담소(상담대표기관)가 협의이혼의무상담제를 위한 협약식을 실시하였다. 28일 동산중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지부

3월 25일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 지원사업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11일, 25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를 실시하였다. 박태영, 박경환, 최은철, 전상훈, 남호진, 박진수, 조은희, 이태현, 안혜림, 김주현, 이규영, 이

정훈, 윤용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총 10회, 광주지법원 총 3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9쌍의 부모를 대상으로 총 6회 실시하였다. 3월 6일 상담소 사례회의 및 수퍼비전을 실시하였다. 한승일, 문대근, 김승구, 손수정, 이수연, 이경숙, 송지민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기관지정사업으로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총 13회 실시하였다. 부설 보라상담원에서 경찰동행 가정폭력피해자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였다. 김진영, 한두환, 최성중, 양승철, 임용호, 정원진, 박지훈(성남), 황미옥, 김현명, 박진우, 서정식, 강은혜, 김소이, 한승일, 소윤수, 손난주, 구민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매주 화요일 14시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지부

3월 13일 창립 28주년 정기총회 및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전주지부

3월 2일, 6일, 14일, 16일, 17일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 협의이혼 상담을 실시하였다. 9일 전주지부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와 가정법률, 가정폭력 협업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정아람, 진휘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제주지부

김홍면, 황인철, 백신옥, 김성훈, 김수진, 최호웅, 조준범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3월 2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가정폭력행위자 22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춘천지부

3월 6일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임미선, 허남정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2017년 2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7년 2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2,677건으로 본부가 6,724건, 지부가 5,953건이었다.

본부는 6,109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426건·소장 등 서류작성 148건·소송구조 41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101건·화해조정 748건·소장 등 서류작성 45건·소송구조 59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109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7년 1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1.2%→1.5%), 부부갈등(1.6%→1.9%), 사실혼해소(1.0%→1.1%), 위자료·재산분할(10.7%→11.5%), 친생자존부(1.8%→1.9%), 가족관계등록부(2.5%→2.6%), 가사절차(7.7%→7.8%)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4%→0.6%),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폭행(0.0%→0.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109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30건(20.1%), 전화상담 4,681건(76.6%), 통신 및 인터넷상담 196건(3.2%), 지상 2건(0.1%)이었다

2017년 3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7,057					
법률상담 (6,437)					
면접	전화	통신	서신	지상	
1,356	4,810	269	1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469		105		46	

* 2017/3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24,166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6,724	1,230	4,681	196		지상 2	6,109	426	148	41
강릉 (033) 652-9555	63	39	17				56	6	1	
구리·남양주 (031) 551-9976	295	180	71				251	36	1	7
군산 (063) 442-1560	117	28	72				100	15		2
대구 (053) 745-4501	845	179	36	4		출장 262	481	356		8
대전 (042) 520-5258	211	42	166				208		3	
제주 (064) 753-9421	198	34	148				182	15	1	
동해 (033) 535-0188	97	53	44				97			
목포 (061) 273-2514	150		150				150			
부천 (032) 667-2314	272	55	193				248	24		
성남 (031) 707-6661	350	174	96	3		출장 18	291	46	7	6
수원 (031) 243-4600	391	110	219	2		출장 31	362	22	6	1
순천 (061) 753-9910	258	71	174				245	10	3	
충구 (02)2238-6554	118	86	31				117		1	
인동 (054) 856-4200	99	12	48				60	37	2	
울산 (052) 246-9568	155	32	115				147		5	3
익산 (063) 851-5113	301	103	183			출장 5	291		5	5
인천 (032) 865-1120	366	193	148				341	12		13
전주 (063) 244-2930	255	101	70	74	8		253			2
청음 (063) 535-3705	103	37	59				96	6		1
진주 (055) 746-7975	107	28	47				75	28		4
창원·마산 (055) 261-0280	251	100	87	3			190	59	1	1
청주 (043) 257-0088	181	49	50	1			100	72	9	
춘천 (033) 257-4688	361	12	20			출장 325	357	4		
태백 (033) 554-4004	69	39	30				69			
평택·인성 (031) 611-4251	94	49	45				94			
제천 (043) 644-5690	175	54	115				169			6
포항 (054) 283-7555	71	10	61				71			
지부총상담	5,953	1,870	2,495	87	8	출장 641	5,101	748	45	59
총 상담	12,677	3,100	7,176	283	8	출장 641 지상 2	11,210	1,174	193	100

**2017/2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70,010건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고학년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증액 결정

법률구조 2016-298

담당 : 김종숙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증액 청구

내용 : 청구인(여, 42세)과 상대방(남, 46세)은 2005년 1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1세)을 두었으나, 2008년 7월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다. 당시 조정조서에 따르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 30만원씩을, 2018년 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40만원씩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대방은 이혼 후에도 사건본인에게 자주 연락하며 사건본인의 옷, 책 등 각종 물품을 사주는 등 잘 살피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양육비를 30만원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과는 달리 상대방을 기다리는 사건본인의 연락도 잘 받지 않았고, 2012년 재혼을 한 뒤에는 사건본인을 아예 만나러 오지 않았다. 한편 사건본인이 고학년에 진학함에 따라 사건본인의 교육비가 증가한 반면, 청구인은 과거 방과 후 강사로 일하며 돈을 벌었지만 현재는 큰 수술을 받은 후 친정 부모님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창원지방법원 2016.10.24.)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0000드단0000 이혼 등 사건의 2008. 7. 조정조서 제4항에 기재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부분을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1. 1.부터 2025. 7. 11.까지 매월

500,000원씩을 각 말일에 지급한다.」로 변경한다.

2.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제1항 외에는 향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의 양육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IMF 경제위기 때 발생한 채무로 이혼하고 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여성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6-322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9세)은 전 배우자와 함께 환경약품 및 기자재를 기업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주거래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운영이 어려워졌다. 신청인은 급한대로 은행, 지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였으나, 계속되는 경영 부진으로 사업은 부도처리 되었다. 이후 1999년경 신청인 소유의 아파트는 경매로 매각되었고, 신청인의 전 배우자는 채권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어 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갈등으로 이어져 신청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자녀들은 학업을 중단하였다. 신청인은 빚을 갚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해 말기 신부전증에 걸렸고, 현재는 2급 장애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신청인은 사실상 채무를 변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채무자를 면책한다.

**알코올 중독으로 주사와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해 이혼 결정**

법률구조 2016-401

담당 : 이지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피고(여, 31세)와 원고(남, 30세)는 2013년 8월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2세, 남 1세)을 두고 있다. 혼인 전 원고는 평소 분노조절장애를 앓으며 정신과 약물 복용을 하기도 했었으나 혼인 후 이러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약물 복용을 중지한 대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고의 알코올중독은 점점 심해져서, 일조차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 했고, 이에 피고도 동의하며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원고는 퇴원을 하면 다시 술에 의존 하면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원고에게 폭행을 하는 등 태도가 나아지지 않았다. 2015년 여름경 피고가 술을 마시고 집에 와 주사를 부려 원고는 급히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심터로 피신하였다. 그러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역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6.10.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
3.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하되,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원고와 피고가 함께 부담한다.
4. 원고의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실시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호간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폭력 등으로 교도소 복역을 반복한
남편에 대해 이혼 결정**

법률구조 2016-333

담당 : 장윤선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태국인인 원고(여, 29세)와 피고(남, 37세)는 2010년 10월 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5세)을 두고 있다. 혼인 생활 초기부터 피고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원고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 폭행을 하였다. 2011년 9월 경 피고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되었고, 이후에도 비슷한 사유로 수년에 걸쳐 교도소에 복역과 출소를 반복했다. 원고는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위해 출산 직후부터 다시 공장에서 일 하게 되었고, 사건본인을 키워줄 사람이 없어 태국에 계신 원고의 부모님이 입국하여 사건본인을 돌봤다. 그러나 피고는 출소해 집에 머무를 때면 원고의 부모를 무시하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2016년 10월경 또 다시 유흥업소 여종업원 폭행을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6. 11. 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300,000원씩을 지급한다.
4.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연락 두절로 부의 사망을 몰랐던 자의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인정**

법률구조 2015-518

담당 : 이성호 변호사

사건명 : 유류분

내용 : 원고(남, 62세)의 부친이 2010년 4월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여, 88세), 원고와 원고의 동생 등 3인을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원고는 어린 시절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았음에도 부모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증상이 심해졌으며, 장기간 부모와 일체의 연락이나 교류 없이 살아온 탓에 부친의 사망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당연히 아무런 재산 상속을 받은 바도 없었다. 원고는 이후 우연한 계기로 부친의 사망 사실 및 피고가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에 망인으로부터 시가 4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망인의 상속인의 자격에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수원지방법원 2016.11.25.)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채무가 발생한 노년여성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6-231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75세)은 1997년경 영어교육회사를 시작하였고, 한 방송사와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이 크게 번창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무려 52개의 가맹점을 내기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그 중 27개의 가맹점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가맹점 중 한 곳이 방송사 로고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회사는 방송사와의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그 결과 신청인의 사업은 급격히 어려워졌고, 적자를 견디지 못해 2001년 1월 폐업을 하였다. 신청인은 당시에 생긴 채무를 변제하고자 2008년경부터 한 회사에서 다시 영어를 가르쳤고, 2011년 10월 경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매월 약 100만원씩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직장을 나오게 된 신청인은 워크아웃에 따른 납입액을 납입하지

못해 어렵게 신청한 워크아웃이 폐지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사실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기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채무자를 면책한다.

자녀 양육 갈등으로 폭력을 일삼던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법률구조 2016-191

담당 : 이일용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3세)와 피고(남, 33세)는 2013년 1월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3세)을 두었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에 수시로 원고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일상에서 겪게 되는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아 왔다. 특히 사건본인의 양육 방식을 둘러싸고 부부간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깊어지고 사건본인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나 피고는 이를 조율하거나 개선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2016. 3.경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하여 원고는 부모의 집으로 피신을 하는 한편,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생활의 안정 및 사건본인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16. 12. 21.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이 법원 2016즈단000호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1. 3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매월 30일에 월

750,000원을 각 지급한다.

6. 피고는 사건본인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에 따른 등록금 전액을 피고의 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한다.

7.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고는 사건본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면접교섭 가능 여부 및 만날 시간, 장소 및 방법 등을 원고와 협의한다.

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20: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숙박 포함)

나. 추석 및 설날연휴가 포함된 공휴일 중 각 1박2일

다. 면접교섭 장소는 피고의 주소지 또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라. 피고가 면접교섭을 위해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데려다 준다.

8.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9.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10.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지급을 불성실하게 한 전 부인에 대해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6-234

담당 : 양승찬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38세)과 피신청인(여, 30세)은 2006년 1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1세)을 두었으나, 2010년 11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신청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이후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사건본인의 양육비와 함께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혼자 부담하던 신청인은 더 이상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없어 2014년 피신청인을 상대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년 1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04.1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1,4,7,10월에 3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

었다. 하지만 조정의 성립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어렵게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어 신청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인용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느단***호 양육비 사건의 2015. 1. 22 자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 양육비 1,800,000원을 지급하되 3회에 분할하여 이 결정 고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간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장래 양육비 조정

법률구조 2016-356

담당 : 김종민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청구

내용 : 청구인(여, 44세)과 상대방(남, 46세)은 법률상 부로서 슬하에 청구 외 자녀(남, 21세)와 사건본인(여, 17세)을 두었으나, 2001년 1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었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대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별도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 2010년 8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데려왔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그 이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버는 월 100만원 가량의 소득으로 어렵게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지만,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인 상대방은 현재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건본인은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하며, 학교에서도 소질이 있다며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청구인은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 (대전가정법원 2017.1.12)

1.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건본인의 미술과외비 월 금 500,000원을 상대방이 사건본인

이 다니는 학원 또는 과외강사에게 직접 수납하는 방식으로 부담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째 주 일요일 12:00부터 같은 날 15: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청구인은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며, 구체적인 일정, 장소 등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상대방은 제2항에서 정한 면접교섭 외에도 사건본인과 자주 연락하는 등 사건본인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4. 청구인과 상대방은 서로 사생활을 존중하며, 사전에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사무실이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제한다.

5.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6.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사건본인의 양육과 관련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6-283

담당 : 김효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세)와 피고(남, 58세)는 1983년에 혼인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생활 초기부터 음주가 잦았고, 집안의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술주정이 심하였으며 어린 자녀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동안에도 이를 돌보는 커닝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악담을 하였다. 또한 자녀가 장성하여 결혼한 뒤 손자녀의 돌잔치 자리에서까지 자녀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흥비로 과다한 금액의 돈을 소비하여 채무를 지고는 원고로 하여금 빚을 갚도록 종용하면서도 2009년 수령한 퇴직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해 버리고는 이내 집을 나가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이후로는 연락도 되지 않고 그 행방이 묘연하여 원고는 파탄에 이른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명의로용으로 발생한 채무로 고통받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6-429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지적장애 3급의 신청인(남, 48세)은 2008년경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자금 및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신청인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퇴직을 당하였고,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시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다. 당시 신청인은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되어 신청인 명의로 7통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고, 막대한 통신비 채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신청인은 현재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국가로부터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채무를 변제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신청인은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채무자를 면책한다.

주사 및 폭언, 의처증으로 아내를 괴롭힌 남편에 대한 이혼 등 조정

법률구조 2015-370

담당 : 설해원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남, 45세)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여, 40세)는 2006년 2월 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사건본인(남, 10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 초부터 주사 및 폭언을 행하였고, 이는 피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하였을 당시뿐만 아니라 사건본인 출산 후 힘든 육아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나빠졌을 때에도 계속되었다. 피고와 사건본인이 원고의 주사와 폭언 등을 피하여 방문을 잠그자 원고는 칼을 들고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위

협하여 피고가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다. 원고는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한 후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났고, 피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사하며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심하게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역시 이혼반소제기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8. 12.)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함)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함)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7.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위 금액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2016. 8.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600,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5.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2016. 9. 17. 10:00부터 17:00까지

나.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매월 셋째 일요일 10:00부터 17:00까지

다. 2017.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10:00부터 17:00까지

라. 사건본인의 인도장소는 피고와 사건본인이 다니는 교회로 하고, 원고는 면접교섭 후 사건본인을 피고의 거주지로 데려다 준다. 다만, 인도 장소는 원고, 피고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마. '다' 항 기재 면접교섭 시간은 사건본인의 의사 및 원고, 피고의 협의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바. 사건본인의 방학기간 및 명절(설날, 추석)때 사건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고는 며칠 동안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할 수 있다.

6.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한 전 남편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판결

법률구조 2015-405

담당 : 박지훈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9세)과 상대방(남, 53세)은 2005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9세)을 두었으나, 2013년 1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중국으로 데려가 기숙학교에 입학시키고 4개월 동안 한 번도 만나러 가지 않는 등 사건본인을 사실상 방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방학이 되어 한국에 들어온 사건본인과 청구인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였고, 청구인은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서야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었다. 어렵게 다시 만난 사건본인은 청구인을 보자마자 청구인과 살고 싶다고 말했고,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은 서둘러 사건본인을 중국으로 돌려보내려 하였다. 청구인은 바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였고(2015년 7월 확정),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년 7월부터 사건본인을 데려와 양육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데려온 이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키우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7.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2017년 4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치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전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4월 10일 4월 24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법 교육

노숙인, 취약계층 시민들의 사회복귀 및 경제적 자
활을 돕기 위해 시설이용자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파산 및 면책 그리고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 ▶ 일시 : 2017년 4월 14일(금) 오후 2시
- ▶ 대상 : 복지시설 이용자, 시설 실무자 외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내용
 1.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과 명의도용피해 방지
등의 법교육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 신용회복절차 및 지원 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3.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제도 안내 - LH주택공사
 4. 건강보험 관련 안내 - 건강보험공단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이야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
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2017년 2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1월, 8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4월 27일(목)	마음의 구성과 감정
5월 25일(목)	관계의 뇌와 사랑
6월 22일(목)	분노의 의미와 기능
7월 27일(목)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
9월 28일(목)	전이감정과 부모 세대와의 갈등
10월 26일(목)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11월 23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2월 28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상담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이야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
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법 교육

노숙인, 취약계층 시민들의 사회복귀 및 경제적 자
활을 돕기 위해 시설이용자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파산 및 면책 그리고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